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및여비지급 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7
----------	-----

제안년월일 : 2000년 2월 10일

제안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함.
(안 제2조)

나.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여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하고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함.(안 제3조)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 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매월 350,000원”을 “매월 550,000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조 제2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50,000원”을 “70,000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다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파주시위원회조례 제12조제3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2.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u>350,000원</u>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생략) 제3조 (회의수당) ①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u>50,000원</u>으로 하며,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 <u>회기수당</u> ----- -----. 제2조(의정활동비) ①----- ----- ----- <u>550,000원</u>의 ----- -----. ② (원안과 같음) 제3조 (회기수당) 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 <u>회기수당</u> ----- ----- <u>70,000원</u> ----- -----.